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8일

여수시장 기영기



여수시 조례 제2259호

붙임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략)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② -----

----- 2027년 12월 31일-----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